

## 광 주 회 생 법 원

### 제 1 파 산 부

### 결 정

사 건 2025회합5021 회생  
채 무 자 주식회사 위니아  
광주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10 (안청동)  
관 리 인 김혁표

### 주 문

1.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를 '2026. 5. 13. 14:00 광주회생법원 제205호 법정'에서 '2026. 6. 11. 14:00 광주회생법원 제205호 법정'으로 변경한다.
2. 관리인, 채무자,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·회생담보권자·주주·지분권자 중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자 이외의 자(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이외의 자 포함)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3조, 제182조, 제232조 제2항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.

### 이 유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4조, 제232조 제1항, 제162조,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6. 5. 7.

재판장 판사 김 성 주 전자서명완료

판사 김 경 중 전자서명완료

판사 김 민 기 전자서명완료

열람용